

전주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나158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나15854 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 6. 14 선고 2022가단1166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조합

피고, 항소인 C

변론종결 2024. 5. 22.

판결선고 2024. 6. 12.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 6. 14. 선고 2022가단1166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9. 체결한 매매계약,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9. 체결한 부동산매매예약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는 D에게,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21. 3. 23. 접수 제25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2)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21. 3. 23. 접수 제25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쪽 제17행의 '사실' 다음에 '(피고는 D에게 1억 원의 미수금 채권이 있어 순재산이 4,000만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4, 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이 법원에 2021. 11. 15.경 파산, 면책 신청을 하였다가 2022. 6. 7. 파산선고를 받은 뒤 면책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설민수, 판사 고연금, 판사 송인우

별지